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업재해의 범위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추가〉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441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어업재해의 범위에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포함	3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12.

3. 회 부 일 : 2024. 1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그 밖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어업재해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어가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계획하고 있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업재해로도 규정하여 그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업재해의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중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가함으로써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로부터 어가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어업재해의 범위에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포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¹⁾ 중 원전 오염수 방류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u>이상수온(異常水溫)</u> ,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3. ----- ----- ----- <u>이상수온(異常水溫)</u>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원전 오염수 방류----- ----- ----- -----.
4. ~ 13. (생략)	4. ~ 13. (현행과 같음)

1)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현재 해당 사회재난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6439호)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임(행정안전위원회, 2024.12.13. 회부).

나. 검토의견

- 2023년 8월부터 시작된 일본국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이후 해양환경에 대한 훼손 가능성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일본국 정부는 2023.8.24. 첫 방류를 개시한 이래 2024.11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7만 8,200m³의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였고, 앞으로도 장기간 해양방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현황(2024.8월말 까지)]

구분	방류 기간	오염수 방류량
1차	‘23.08.24~’23.09.11	7,788m ³
2차	‘23.10.05~’23.10.23	7,810m ³
3차	‘23.11.02~’23.11.20	7,753m ³
4차	‘24.02.28~’24.03.17	7,794m ³
5차	‘24.04.19~’24.05.07	7,827m ³
6차	‘24.05.17~’24.06.04	7,892m ³
7차	‘24.06.28~’24.07.16	7,847m ³
8차	‘24.08.07~’24.08.25	7,897m ³
9차	‘24.09.26~’24.10.14	7,817m ³
10차	‘24.10.17.~’24.11.04	7,837m ³

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브리핑 내용을 참고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제출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국내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 오염수의 국내 유입 여부 감시를 위한 해역 조사, 생산단계(위판장·양식장 등) 및 유통단계(마트·시장 등) 수산물에 대한 검사 등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나, 해양환경 및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 도입을 위해 2022년 36억 8,500만원, 2023년 63억 8,500만원, 2024년에는 27억 7,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종래 실시하던 해양방사능 정기조사에 더해 긴급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정기조사의 정점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를 현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어업재해’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규정해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가 보호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어업재해의 범위 관련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현 행	개 정 안
“어업재해”란 <u>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u>	현행법 +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u>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u> <u>원전 오염수 방류</u>

2023년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해양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확산된 사례가 있고, 오염수 방류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법률에서 규율하는 어업재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각종 지원 및 대책마련을 도모하려는 데에
개정안은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 다만, 현행법의 다른 조문과의 관계 및 법체계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점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이는데, 우선 현행법은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 및 학자금 면제, 이자 감면 등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및 경영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특정 현상이 현행법에 따른 어업재해로 인정되려면 해당 현상으로
인해 어업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고, 피해의 규모·내용을
추산할 수 있는 체계 및 방법이 갖추어져 있거나, 연구 등을 통해
그러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²⁾³⁾⁴⁾.

다음으로, 현행법상 어업재해는 이상조류나 적조현상, 그 밖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로 규정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인위적인 원인,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시키는

2) 동 법에 따른 피해 복구절차에 대해서는 [참고자료1] 참조

3) 현재 어업재해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조류, 이상수온, 적조현상 등은 그동안의 연구와 피해 보고
등을 통해 어업에 미치는 피해 발생 구조가 상당 부분 규명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액의
산정과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지원이 가능함.

4) 국회입법조사처(이슈와 논점, 2023)는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시기에 대하여 예
측 모델링 방법과 기초자료에 따라 다양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북태평양
해류순환시스템을 고려할 때, 오염수 방류가 국내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
측된다고 분석한 바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이슈와 논점 제2079호, 2023.3.31.

것에 대하여 법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회재난⁵⁾과 달리 원전오염수 방류를 특별히 어업재해의 개념에 포함시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문(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적 재난 중 원전 오염수 방류)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의 심사 추이를 살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⁶⁾되어 있음.

□ 관련된 부처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2011년 이후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위축 징후가 없는 등 실제 피해 발생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개정안 대신 현행 법령과 예산체계를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5) 화재, 붕괴, 교통사고, 폭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등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6439호) - 행정안전위원회, 2024.12.13. 회부

문 의 처
02)6788-5422

참고 1

피해 복구절차(예시 : 고수온)

항목	주체	내용
피해신고	어업인	관할 시·군·구에 피해상황 신고 (피해량, 품종, 피해발생기간 등)



피해현장조사	시·군·구	피해신고 어가를 방문하여 폐사 여부 확인, 수온 측정, 어업인 진술 청취 등 1차 조사
--------	-------	---



피해 원인 조사	국립수산과학원 혹은 수산기술사업소	피해원인 규명 (수질, 질병발생 여부, 주변 양식장 피해현황, 해당 해역의 수온·염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인지 확정)
----------	--------------------------	---



피해량 산정	시·군·구	고수온 피해로 판단된 어가의 피해량 산정 * 피해량은 피해 신고 접수 이후 지자체에서 주기적으로 어가 방문하여 직접 산정
--------	-------	---



지자체별 복구계획 수립	시·도	어가 단위로 피해량, 피해금액, 재난지원금, 융자 등 산출
-----------------	-----	-------------------------------------



복구계획 의결	해수부	어업재해대책심의위를 통해 의결
---------	-----	------------------